

【별지 제7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개정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⑦ 대표자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채권매입추심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채권매입추심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②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②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⑯, ⑰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 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⑯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⑰란 작성)
 -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천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⑳란 작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1) 변경전 : 현재 등록되어있는 영위업무를 모두 표기한다.
 - 2) 변경후 : 변경 후 영위하려는 업무를 표기하되,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겸업이 금지된 영위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 가. 법인의 경우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종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